

「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」  
**심 사 보 고 서**

**조례심사특별위원회**

# 「평창군 국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4. 4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4. 19(목)

다. 상정일자 : 2012. 4. 26(목) 제1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기획감사실장)

-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, 기존 공무원 위주의 행정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을 접목하여 국내·외 교류의 실효성 제고로 행정·민간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교류협력 업무의 추진 (안 제6조 ~ 안 제10조)
  - 장기계획(5개년 계획) 및 매년 교류기본계획(연간 계획) 수립 시행
  - 우호교류 협력 관계 원칙, 발전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
  -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지원
- 공무원 파견 (안 제21조 ~ 안 제27조)
  - 공무원 파견 1년 원칙
  - 상호파견 협정에 따라 숙소, 숙소 생활용품 등 지원
  - 군 주재 외국도시 공무원 복무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준용하여 배치부서의 장이 관리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국내 자치단체 및 국외 도시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연계 접목시키고자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 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교류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류원칙,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 및 범위 등 교류협력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과
  -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절차, 교류도시의 선정 기준, 체결에 관한 사항과 함께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시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.
  - 또한, 교류도시간 공무원 파견에 대한 기간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국내·외 도시간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
  - 행정위주의 교류보다는 민간단체 교류에 대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유치,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교류사업 추진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국·내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